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2267
----------	------

제출일자 : 2023. 3. 8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현재 (재)달성장학재단의 경우 군 교육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달성교육재단 출범시 상근 임·직원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 진로·진학 상담실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기간 : 2023. 4. 1. ~ 이전 시 (5년 단위 재계약)
- 나. 사용자 : (재)달성장학재단
- 다. 허가재산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 5층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라. 사용면적 : 348.68㎡(2층: 25.89㎡, 5층: 322.79㎡)
- 마. 사용목적 : (재)달성장학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
[진로진학상담실(2층), 사무실 및 회의실 등(5층)]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붙임)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 생략